

사단법인

韓國知的 所有權 學會 소식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RESEARCH SOCIETY (KIPS) NEWS

창간- 1986. 3. 31

등록- 1237(1986. 7. 31)

● 발행인 : 송상현

● 편집인 : 김용환

●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지적소유권학회

756-5012
738-4506

半導體 칩의 法的 保護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머리말

현대의 기술문명은 과거에는 상상조차하기 어려웠던 신종 제품들을 속속 등장시키고 있다. 자동차, 비행기, 냉장고, TV, 전축 등에 이어 VTR, 컴퓨터, 로보트에 이르기까지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는 그야말로 눈부신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半導體 칩은 바로 그러한 첨단 기술발전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半導體 칩 또는 半導體 集積回路란 한변이 수밀리에 불과한 半導體 基板上 많은 경우에는 수십만 개에 달하는 트랜지스터, 콘덴서 등의 回路 素子들을 도선으로 연결하여 집적시킨 전자회로를 말한다. 半導體 칩에 배치할 回路 素子의 수는 칩의 기능이 고도화될수록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새로운 회로배치방법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일단 개발된 칩을 복제하



金 建 植(서울 法大 교수)

는 것은 기술적으로 극히 용이 하므로 고도의 칩을 개발해내기 위한 의욕을 고취시키려면 그 칩의 設計를 법적으로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 半導體 業界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물론이고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연구개발비용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따라서 半導體 칩의 法的 保護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강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곳에서는 이미 독자적인 법률을 마련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입법을 참고로 하여 半導體 칩의 法的 保護 上의 몇 가지 문제점을 소개하기로 한다.

1. 보호의 대상

半導體 칩을 제조하는 데는 수많은 기술이 이용된다. 그중의 일부, 예컨대 논리설계나 트랜지스

타인의 모방을 금지할 뿐이므로 기존의 半導體 칩의 回路配置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만 복사(copy)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創作한 것인 경우에는 침해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이점에서 복사행위가 없는 경우에도 類似性만 있으면 책임을 지게 되어있는 특허권의 경우와 구별된다. 半導體 칩의 回路配置에 대한 권리가 단순한 模倣 禁止權에 그치는 것이라면 구태여 별도로 법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은 기존법률의 개정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半導體 칩분야의 기술개발자들의 이익을 한결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같은 타인의 모방을 금지할 수 있는 지위를 새로운 유형의 物權의 財產權으로 고양시킨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 回路配置의 창작자가 設定登録에 따라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권리는 回路配置를 “業으로서”에 한정되기 때문에 개인의 私的인 양도행위는 그 권리의 침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4. 리버스엔지니어링, 善意의 侵害, 最初의 賣買

미국법과 일본법은 모두 이른바 리버스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을 허용하고 있다. 즉 타인의 칩을 연구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칩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것이 결국 그 분야의 기술혁신에 기여할 것이라는 취지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리버스엔지니어링이 허용되는 정확한 범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아무리 리버스엔지니어링을 거쳤다하더라도 완전히 동일한 칩을 만드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칩을 만드는 것은 허용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기존의 칩과 약간 다른 것에 불과하다면 어떠한가? 리버스엔지니어링抗辯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그같은 투자의 존재여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다.

미국법과 일본법은 또한 모두 善意의 侵害抗辯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半導體 칩(또는 그 칩을 이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그 침해사실을 모르고 善意, 無過失로 구입한

자가 다시 그 칩을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그 칩을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양도하기 전에 침해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도 양도는 가능하며 상당한 사용료(royalty)를 권리자에게 지급하기만 하면 된다. 구입자의 과실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半導體 칩을 제조업자로 공급받아 그것을 자기제품의 部品으로 사용하는 제조업자의 注意義務는 칩이 들어있는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판매상의 注意義務보다는 더 무겁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적법하게 제조된 칩을 양수한 자는 권리자의 허락을 다시 받지 않고도 그 칩을 사용, 판매할 수 있다는 이른바 “최초의 매매”항변(first sale defense)이 兩國法에서 모두 인정되고 있다.

맺음말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일본에서와 같은 半導體 칩保護法을 제정할 것인가는 그 제정의 여부보다도 시기가 문제라고 본다. 그 시기는 國內半導體 產業의 현재 기술수준과 발전속도, 미국등의 通商壓力 등 여러관련여건들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학회 활동 일지

○ 本學會는 1988. 4. 12. 司法研修院의 知的所有權 연구모임의 出發을 격려하는 뜻으로 宋相現 회장이 知的所有權法의 領域과 주변관련분야와의 관계에 대하여 2시간 강연을 하고 질의응답이 있었다.

○ 1988. 4. 14 外信記者클럽에서 本學會理事會를 열고 금년도 국제학술회의 준비에 관하여 토론을 하였다.

○ 1988. 4. 14. 國防大學院으로부터 本學會에 대한 강연요청이 있어서 宋相現 회장이 武器體系를 개발하는 將校들에게 특히, 노우하우, 기술도입 등을 중심으로 한 知的所有權 강의를 하였다.

○ 1988. 4. 20. 外信記者클럽에서 本學會 理事會를 개최하고 금년도 국제학술회의를 위한 연구, 준비, 진행 등에 관하여 재차 논의하고 鄭鎮勝 부회장(KDI)에게 학술회의의 조직과 연구에 관한 임무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 韓國著作人協會가 社團法人 韓國文藝學術著作權協會로 출범하기 위한 정기총회를 1988. 5.

7. 변호사 회관에서 개최함에 있어서 宋相現회장 과 金洞玄이사가 참석하여 黃迪仁 安京煥 兩教授 와 함께理事로 선임되었다.

○ 韓國著作權研究所 所長 韓勝憲 변호사가 「著作權의 法制와 實務」(三民社刊 1988)라는 力著를一部 보내주셨다. 會員들의 많은 利用을 바라고 韓변호사님의 寄贈에 감사드린다.

韓 國 知 的 所 有 權 學 會

본 학회는 知的所有權에 관한 法律(컴퓨터 犯罪, 프라이버시保護 포함)·制度的 研究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社會, 經濟 및 文化 전반에 걸친 인접 학문과의 공동 연구활동을 통하여 명실공히 知的所有權 分野에 관한 연구를 체계화 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이 分野의 研究 또는 實務에 종사하거나 관심이 깊은 大學教授, 辯護士, 辨理士, 自然科學者, 工學者, 文人, 音樂家, 美術家, 產業디자인전문가, 建築家, 發明家, 情報處理專門家, 判·檢事나 기타 人文社會科學을 전공한 권위있는 研究陣들이 참여한 단체입니다. 관심있는 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會員加入을 바랍니다.

주 소 : 110 서울 종로구 사직동 304-28

한국사회과학도서관내

사단법인 韓國知的所有權學會

전 화 : 학회사무실 738-4506

宋相現회장 886-0101交 2785

李廷勳 總務 756-5012

회비 : 일반회원 10,000 원

기관회원 200,000 원

은행구좌번호 :

제일은행 서소문지점 275-10-078956

※ 86년 87년도 및 88년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회원께서는 조속히 회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